

2019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례집



목 차

I. 청탁금지법 소개	
1. 제정취지	4
2. 개정내용	5
3. 현행법령	6
II.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1. 승진등 인사	31
2. 경조사 및 행사	36
3. 식사(음식물)	46
4.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51
5. 명절	56
6. 의회	61
7. 외부강의	66
8. 기타사례	74
III.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1. 부정청탁	89
2. 금품수수	92
3. 외부강의	96

I . 청탁금지법 소개

1. 제정취지
2. 개정내용
3. 현행법령

I. 청탁금지법 소개

1 제정취지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방지를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2

개정내용

□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2018.01.17.)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 원	동 일
	선 물	5만 원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의원포함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사례금 총액 제한없음)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사례금 총액 제한없음)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

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 16324호,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

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 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 삭제 <2018. 12. 24.>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화환·조화)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5만원 10만원(농·수산물)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Ⅱ.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1. 승진등 인사
2. 경조사 및 행사
3. 식사(음식물)
4.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5. 명절
6. 의회
7. 외부강의
8. 기타사례

※ 본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외부강의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개정법률 시행(2020.05.27.) 이후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상황별 사례 및 판단기준

1 승진등 인사

사례 1

Q. 승진 인사 이동시 道 공직자 및 산하기관, 시·군에서 道 공직자에게 난, 꽃 등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A. 선물 가능.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난·꽃 화분 등 가능함

해설

-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함
- 인사철 선물
 - 화분, 난, 떡 등 농·축산물 ⇒ (10만원 이하 가능)
 - 농·축산물 외 선물 ⇒ (5만원 이하 가능)
- ◆ 단, 이해관계(조사·감사·지도·감독, 예산·상훈·평가 등)가 인정되는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2

Q. 도청 ○○부서에서 근무하는 A주무관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상담은 가능.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해 상담은 가능함
단,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함

해설

-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상담은 가능함
- ◆ 단,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함
- ◆ 아울러,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계 대상에 해당함

☞ 부정청탁관련 벌칙 조항의 정리

<부정청탁 한 자>	<연결고리>	<직무담당 공직자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직접 청탁 : 제재대상 제외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무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직무 수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절 표시 : 징계 및 벌칙 제외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제1항

- ◆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사례 3

Q. 시·군 평가기간에 피평가자(시 공무원)로부터 평가자(도 공무원)가 3만원 이하의 식사 및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제공 불가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직접적인 이익 진행 중 또는 대가성이 명백한 상황)되는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해설

-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 단, 이해관계(조사·감사·지도·감독, 예산·상훈·평가 등)가 인정되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2 경조사 및 행사

사례 1

Q. 공공기관 내 동료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A.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가능.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 ◆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단속·점검·확인·평가·감사·계약·민원업무부서 근무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사례 2

Q. 결혼식과 돌잔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 다 경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결혼식만 경조사에 포함.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에 한정됨

해설

- ◆ 경조사비는 결혼식의 축의금, 장례식의 조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또한,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통신망(경기도 행정포털시스템)에 돌잔치를 공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아니나, 공지로 인하여 받는 돌잔치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이 불가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3

Q. 돌잔치를 할 경우 하객(공직자등 포함)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함이 가능한지 여부

A. 3만원 이상 식사 제공 가능. 돌잔치는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식사 제공 가능

해설

- ◆ 돌잔치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사례 4

Q. 동료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가족 4명이 참석해야하는 경우 경조사비가 법적으로 5만원 내외인데 5만원 이상 금액은 할 수 없는지 여부

A. 5만원(화환·조화 10만원)내 가능.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예외적으로 허용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될 수 있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으로 한다.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 ◆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단속·점검·확인·평가·감사·계약·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사례 5

Q. 결혼식 이후 참석했던 동료들에게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3만원)을 선물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선물 가능한지 여부

A. 선물가능. 직장동료들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해설

- ◆ 직장동료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6

Q. 공직유관단체에서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연관된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숙박·교통·음식물 및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A. 제공 가능.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은 제공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선물도 가능함

해설

-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함
- ◆ 다만,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으로서,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또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선물도 가능함
- 기념품·홍보용품의 범위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제7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사례 7

Q. 도청 직원 A주무관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사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5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A. 법 위반 아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연관된 경우만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해설

- ◆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선물,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8

Q. 도청 직원 C주무관이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A. 법 위반 아님.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함

해설

-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백화점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500만원 상당의 경품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3 식사(음식물)

사례 1

Q.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관계자가 계약담당자와 업무협의 시 음료수 1BOX를 제공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가 수수 가능한지 여부

A. 수수 불가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불가능함

해설

-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 단, 이해관계(조사·감사·지도·감독, 예산·상훈·평가 등)가 인정되는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2

Q.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 여부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

A. 허용 불가능.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수수가 가능한 음식물의 범위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사례 3

Q. 도청의 A팀장과 공공기관 소속 B차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여 1인당 5만원이 나왔는데, B차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의 식사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사례 4

Q. 퇴직예정인 공무원이 퇴임식에 참석한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친구, 인척 등)에게 퇴임식 후 식사 제공 가능 여부

A. 식사 제공 가능. 관련공무원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가능하며,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식사 제공 가능함

해설

-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 또한, 공직자 아닌 민간인(친구, 인척 등)에게 퇴임식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 가능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회환·조화 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사례 1

Q. 도청 ○○부서에서 근무하던 퇴직한 공직자에게 전 직장 동료들이 각출하여 감사의 의미로 금전(전별금) 200만원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A. 제공 가능. 퇴직공직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님

해설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따라서,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사례 2

Q. 도청 ○○부서에서 근무했던 ○○○씨가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경기도 전 직장동료들이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A.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내 선물만 가능

해설

- ◆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될 수 있음
- ◆ 개별 사례에서 직무의 개념과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 ※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례 3

Q.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 선물 가능 여부

A. 선물 불가능.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가 불가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가 불가함
-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형법」 제30조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례 4

Q.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에게 기념패 선물 가능 여부

A. 기념패 가능함.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가액의 기념패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함

해설

-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기념패 또는 공로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써 허용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5

Q.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비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싶은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금전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A. 불가능. 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가능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그러나,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명절

사례 1

Q. 명절에 과 직원이 감사의 의미로 과장님께 음식물이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A. 선물 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선물은 가능함
- ◆ 다만,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 ※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됨
- ◆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 | |
|---|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

사례 2

Q. 직무관련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특정 부서에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물을 보내도 되는지 문의

A. 명절 선물가능.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에게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내에서는 선물 가능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내의 선물은 가능함
-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 | |
|---|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

사례 3

Q. 직무와 관련한 유관기관에서 명절연휴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 격려품 (과일, 한과세트, 떡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

A. 선물 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함
-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회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4

Q. 동호인회,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에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A. 금전 가능. 동호인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가능하나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움

해설

- ◆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써 제공 가능함
- ◆ 다만, 친목회 등 모임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 5

Q. 생명을 구조해준 119구급대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A. 선물 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10만원)이하에서 선물 가능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함
- ◆ 다만, 구급대원과 시민과의 ①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회환·조화 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6 의회

사례 1

Q. 지방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출입기자단 집으로 3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A. 선물 가능. 지방의회와 출입기자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다만, 의장 등 및 기자와의 ①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 | |
|---|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

사례 2

Q. 경기도 국정감사(행안위, 국토위)시 피감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기관 국회의원들에게 교통편의(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지원 불가능.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움.

해설

-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음
- ◆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3

Q.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연찬회를 할 경우 실·국장이 참석하여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숙박비 등 연찬회 운영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 협찬 가능 여부

A. 지원 불가능.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참석자인 실·국장이 연찬회 운영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협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함
- ◆ 따라서,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연찬회를 할 경우 주최자가 의회이므로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사례 4

Q. 도의원과 상임위원 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업무협의를 위하여 사업담당자와 3만원 이하 식사가 가능 여부

A. 식사가 가능. 상임위원과 관계없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3만원 범위의 식사는 가능. 단, 대가성이 오가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식사 불가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선물은 가능함
- ◆ 다만, 도의원 및 사업담당자와의 ①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예산요구, 감사, 청탁 등의 대가성이 오가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식사제공 불가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례 5

Q. 지방 도의원이 책을 발간하였는데 직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 A과장이 책을 구입해도 되는지 여부

A. 구입가능. 단, 책 가격 이상의 현금 전달 등은 불가

해설

- ◆ 지방 도의원의 책을 A과장이 책 가격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구입으로 볼 수 있음
- ◆ 그러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구입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7 외부강의

사례 1

Q. 도청 ○○부서 A사무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기도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없이 진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법 위반임.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해설

-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아님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제3항

-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2

Q. 도청 ○○부서 A사무관이 자신의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3시간/1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최대 얼마나 수령 가능한지?

A. 60만원 수령가능. 도청 A사무관은 1시간 기준 상한액이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외부강의료는 1시간 기준 상한액의 15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산출근거(60만원) : 1시간 기준(40만원) + 1시간 초과(40만원*50/100)

해설

-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1시간 기준)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3

Q. 도청 ○○부서 A사무관이 외부강의 1시간을 하고 해당기관 제공자로부터 50만원을 수령 후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조치를 안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법 위반임. 공무원의 경우 1시간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해설

- ◆ 초과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초과사례금 반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5항

-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 ◆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4항

-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1시간 기준) : 40만원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4

Q. 도청 ○○부서 B주무관이 육아휴직 중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에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 신고해야 함. B주무관이 육아휴직 기간일지라도 공직자 신분이므로 외부 강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해설

-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시행령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따라 신고 및 반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 ◆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5

Q. 도청 ○○부서 C사무관이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빈번하여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A. 법 위반 아님.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연간 상한액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음

해설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특별규정이고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1시간 기준)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6

Q. 도청 ○○부서 C사무관이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외부강의에 해당함.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형태,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해설

-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타사례

사례 1

Q. 외부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주고 받는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A. 10만원 이내 선물 가능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되며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 및 인도하여야 함

해설

-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
-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사례 2

Q.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함께 해외출장 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 받아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A.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됨

해설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방안(18.11.15, 권익위)

- ◆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 단,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
 -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
- ◆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허용
- ◆ 해외출장 비용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출장 가능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제6호,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3

Q. 특정사기업에서 공무원/공공기관 등에게 자사 제품 구입 시 특별할인을 적용해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A. 위반 아님.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임

해설

-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4

Q. 도청 내 문화 관련 부서에서 도민 문화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지역 문화단체로부터 경품 등 행사 물품을 협찬 받을 수 있는지

A.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일 경우 허용됨

해설

-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임
- ◆ 단, 협찬이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 >

-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사례 5

Q. 경기도를 찾은 주한 외교단 또는 외빈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A. 제공 가능. 주한 외교단 또는 외빈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 아님

해설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경기도를 찾은 주한 외교단 또는 외빈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제한 없이 가능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사례 6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

A. 제공 불가능.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선물은 가능함
- ◆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선물은 불가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7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하는지 여부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해설

-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른 선물 중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을 말함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3호

- ◆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 ◆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가목

- ◆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례 8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 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여부

A. 수수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내 선물은 가능

해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금전은 금지됨

◆ 그러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9

Q. 보험회사 및 은행에서 연말에 캘린더, 다이어리를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제공 가능.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에 해당됨

해설

- ◆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상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 기념품·홍보용품의 범위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사례 10

Q. 도청에서 근무하는 B주무관 딸이 3월초 초등학교 입학 하는데 이전에 다닌 어린이집 선생님께 감사 선물과 편지 전달이 가능한지

A. 선물 등 가능. 법인, 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해설

- ◆ 법령에 따라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 다만,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육교사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항

- ◆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사례 11

Q.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지방자치의회 도의원에게 학교장 이름으로 10만원 상당의 감사패 가능 여부

A. 감사패 가능.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가액의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다만, 학교장과 지역구의원과의 ①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수수 경위와 시기, ④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 12

Q.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간 이후 1학년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A. 선물 가능.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간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해설

-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 그러나,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사교·의례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의 선물을 이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드릴 수 있음
- ◆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수수는 불가함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 13

Q.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가 선물이나 5만원 이하 축의금이 가능한지

A. 제공 불가능.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진행 중이어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간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선물, 축의금 제공 불가함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 또한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선생님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례 14

Q. 기업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A. 기부 가능.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해설

-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됨
-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ㅍ.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1. 부정청탁
2. 금품수수
3. 외부강의

Ⅲ. 신고방법 및 처리기준

1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 대부분의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의 속성상 쉽게 거절하지 못함
 - 부정청탁의 대부분이 공직자등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직자등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 거절이 사실상 어려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거절의무를 부과
 -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정청탁의 신고

-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7조제1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제2항)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부정청탁 신고방법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
- 신고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신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징계 대상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일 경우 징계가능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법 제13조제3항)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 신고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청탁금지법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징계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및 취소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예)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내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구 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의원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없음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징계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과태료 부과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령(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